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

양승현 연구위원

요 약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 7월 7일 입법예고됨
 - 본 건 입법예고안은 (i) 외화보험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등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ii) 금융회사 부담 완화 및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다의적 해석이나 해석상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을 명확화하는 내용들로 구성됨
- 입법예고안은 ① 선불·직불 지급수단에 연계·제휴서비스 규제를 적용하고, ②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보장성 상품 범위에 외화보험을 추가하며, ③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 권유 시 소비자 사전동의 요건을 규정하는 등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함
 - (선불·직불 지급수단 연계·제휴서비스 규제)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금융상품으로 포섭하여 규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범위 확대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관점에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함
 - (외화보험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외화보험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보험의 장기성으로 인해 환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변액보험 등과 같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외화보험 판매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적합성 판단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불초청 권유금지 규제강화) 투자성 상품에 관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방문판매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동의 요건을 추가하고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초청 권유금지 상품을 추가함
 - 2022년 12월부터 금융상품이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보완 입법임
- 그 밖에 소비자 확인 방법으로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자본시장법과 같게 규정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함
 - 아울러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시 이사회 승인 요건을 배제하고, 제3자 연대보증 금지 규제가 모든 대출성 상품에 미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을 정비함
- 본 건 입법예고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그간의 경험과 논의를 반영하여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합리화·명확화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함



1. 검토 배경

- 2022. 7. 7.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하, ‘입법예고안’)이 입법예고¹⁾됨
 - 본 건 입법예고안에는 (i) 불초청 권유 금지범위 확대,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등 금융소비자보호 및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 또한 (ii)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의 확대 등 금융업권 규제 부담 완화 내지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측면에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 및 (iii) 다의적 해석이나 적용상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 규제를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됨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0년 3월 금융소비의 전 과정, 즉 사전 정보제공-영업행위 규제-사후구제 강화로 이어지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제정됨
 - 기존에 업권별로 규제하던 영업행위 규제가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재편되고, 위법계약해지권,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등 규제상 많은 변화가 수반됨에 따라 그간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업권 등은 법령 내용의 해석이나 적용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업무절차에 적용하기 위한 개선점에 관해 논의해 왔음
 - 또한 법 제정·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면서 여러 건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의원발의²⁾ 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강화 내지 보완하기 위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음
- 본 입법예고안은 2021년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간 후, 1년 남짓 경과되어가는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처음 마련된 정부 개정안임
 - 이에 본고에서는 ① 영업행위 규제 강화, ② 그 밖의 규제 합리화·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나누어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업 및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제 개선과 관련된 함의에 관해 논해보고자 함

1) 의견 제출기한은 2022. 7. 7~2022. 8. 16이었음

2) 2022년 8월 17일 현재 총 27건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임



2. 영업행위 규제 강화

가. 선불·직불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제휴서비스 규제 적용

- 선불·직불 지급수단에 대해 연계·제휴서비스에 관한 설명의무 및 불공정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함(영 제3조 제1항 제4호 신설 등)
 - 현행 법령상 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서비스나 은행의 체크카드 같은 선불·직불 지급수단³⁾에는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6대 영업행위 규제⁴⁾가 모두 적용되지 않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규제 대상인 ‘금융상품’을 직접 정의하지 않고 권역별 금융상품(예금,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을 열거한 후, 그와 유사한 상품 내지 서비스를 하위법령에서 열거하여 금융상품에 추가하는 데(법 제2조 제1호), 선불·직불 지급수단은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이에 입법예고안은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연계·제휴서비스가 불합리하게 변경·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카드와의 규제차익을 제거⁵⁾하기 위해 선불·직불 지급수단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⁶⁾에 추가하고자 함
 - 단, 영업행위 규제 전반이 아니라 연계·제휴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연계·제휴서비스 등의 부당 축소·변경 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 본 건 입법예고안의 규제 필요성이나 적정성에 대해서는 반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⁷⁾ ‘동일 기능·동일 규제’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칙에 따라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내지 서비스까지 금융상품으로 포섭하여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료됨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천명하였으나, 금융상품과 동일 기능을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라도 모두가 법 적용대상인 것은 아님
 - ‘보험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보장성 상품’으로 보험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지만, 시행령에 규정된 보장성 상품은 신탁의 공제뿐이고 그 밖에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의 공제는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신탁 외의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소관 행정기관과 감독체계의 상이 등 현실적인 문제로 법 제정 당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⁸⁾ 빈틈없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⁹⁾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함

4)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를 말함

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30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 p. 2

6) 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법 제3조 제1호)

7) 선불결제나 간편결제서비스는 신용카드와 달리 소비자로부터 연회비를 받지 않고 서비스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신용카드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보는 것임(아시아경제(2022. 8. 2), “‘팔은 안으로 굽나’…금소법 개정 예고에 핀테크업계 울상”)

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3. 24),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 p. 8

9) 세계비즈(2022. 7. 11), “‘금소법 적용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금소법 개정안 눈길”

- 아울러 핀테크 등의 발달로 출시되었거나 향후 출시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제 대상인 금융상품을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규제 적용범위 확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 사료됨
- 보장성 상품을 비롯한 금융상품의 범위 확대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공정경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나.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보장성 상품 범위에 외화보험을 추가함(영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신설)

-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인 보장성 상품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현재 시행령에는 변액보험 및 보험료(공제료)의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보험(공제)만 규정¹⁰⁾되어 있음
 - 입법예고안은 외화보험, 즉,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포함)’을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임
-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2021년 12월 발표한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외화보험에 내재된 환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외화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이지만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수령이 외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보면, 환율 변동에 따라 환차익 내지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투자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음
 - 따라서 투자적 성격이 있는 변액보험 등과 동일하게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적용 및 진단기준 등을 포함한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을 제정하여 2022. 7. 1.부로 시행에 들어감

○ 외화보험 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보험상품의 특성인 장기성으로 인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외화보험에 대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 가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

- 외화보험은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된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설명되고 권유된다면 보험상품으로써 소비자의 장래 위험 보장에 효용이 가질 수 있음
- 다만, 입법예고안은 외화보험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모범기준의 적합성 판단기준이 변액보험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까다로워 판매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¹¹⁾함
 - 권유 전 계약자 정보 확인 시, 보험계약자의 보험 가입 목적(실수요 여부), 보험료 납입·유지 능력 등을 확인하고 주요 6개 진단항목¹²⁾에 대해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부적합자로 판단(One-strike out)함

10)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11) 서울경제(2022. 3. 30), “외화보험, 가입 적합성 진단…부적격팬 ‘원스트라이크 아웃’”; 뉴스핌(2022. 5. 10), “강달러에 ‘외화보험’ 뜨는데, 7월부터 가입 어려워” 등을 참조함

12) 가입 희망 금융상품, 외화보험 가입목적,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 보험료 납입 가능 기간, 보험계약 최소 유지기간, 청약금융소비자 여부를 말함

- 향후 외화보험 판매현황, 영업 현장의 판매 프로세스 정착 및 민원발생 추이 등 경과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기준 합리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 권유 금지 규제 강화

○ 소비자 요청 없이 방문·전화 등을 활용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기 전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고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권유가 금지되는 고위험 상품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16조 제1항 제1호 개정)

- ‘불초청 권유금지’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 부당권유행위 금지 유형의 하나로 투자성 상품에만 적용됨
 - 소비자의 요청 없이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으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함으로써 소비자의 사생활을 해치고 충동적 계약 체결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¹³⁾하기 위함임
 - 다만, 현재는 시행령으로 널리 예외를 인정¹⁴⁾하고 있어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 권유가 가능함
- 본 건 입법예고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¹⁵⁾이 이루어짐에 따라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구체적으로 (i) 불초청 권유 전에 미리 소비자에게 개인정보의 취득경로와 방문판매자 등의 성명·소속,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권유하려는 시간·장소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며, (ii)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장내파생상품, 사모펀드, 고난도상품¹⁶⁾의 불초청 권유를 금지함

○ 방문판매법은 방문·전화권유판매 등 이른바 특수판매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i)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ii)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iii)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 (iv)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보험 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보험 거래는 방문판매(대면조접)를 전제로 금융당국에 의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중 규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업법이 그 특성에 맞게 규제하도록 함이 보다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라 사료됨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보험상품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이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본 건 입법개정안은 투자성 상품에 국한된 것으로 보험업과 관련하여 직접 영향은 없음
 - 다만 현재 국회에 모든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방문·전화판매를 규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¹⁷⁾이 발의되어 있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보장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보완입법 논의에서 기존의 보험업 규제와 관련하여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13) 오현주(2022), 『온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단락 15를 참조함

14)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불초청 권유의 금지 적용을 배제함(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15) 2022. 12. 8.부터 시행됨

16)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말함

17)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327호



3. 그 밖의 규제 합리화·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입법예고안은 영업행위 규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 외에도 규제 타당성이나 명확성 측면의 제도 개선사항을 담고 있음

- 예컨대, 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i)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해 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때 전자서명 외에도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ii) 자본시장법과의 규제 정합성을 고려하여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자본시장법과 일치시킴으로써 규제 부담을 줄임
- 그 밖에 (iii) 이사회 등 지배구조 관련 사항이 적용될 수 없는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은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시 이사회 승인 요건을 적용 제외하고, (iv) 제3자 연대보증 금지 규제가 모든 대출성 상품에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해석상 불분명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함

〈표 1〉 규제 합리화·명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입법예고안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범위 (영 §2⑩iii)	•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 전문금융소비자 범위가 동일 규제를 운영 중인 자본시장법령 대비 넓은	• 자본시장법령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규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함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절차 (영 §10③)	•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시 이사회 승인을 요함	•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은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의사 결정기구 승인으로 제·개정을 가능하게 함
금융소비자 확인 방식 (영 §11의2 신설)	•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이행 관련 금융소비자의 확인 방법은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외에 시행령으로 추가 가능 • 시행령에 별도 규정 없음	• 금융소비자 확인 방법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추가하여 전자서명 외에도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함
제3자 연대보증 금지 (영 §15②)	•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중 대출성 상품 관련 제3자 연대보증 요구행위(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다목) 관련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대출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요구’라는 문언을 사용함	• 연대보증 금지 범위가 ‘대출’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대출성 상품’으로 문구를 수정함
구속성 판매 유형 (영 §15④i)	•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중 대출성 상품 관련 구속성 판매(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세부 유형이 시행령에 위임 • 시행령에 금융회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가 명시되지 않음	• ‘금융소비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에 명시적으로 열거함
판매대리·중개업자 증표 발급 기관 (영 §24②i)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 업무 수행 시 대리·중개업자라는 증표를 제시해야 함(법 제26조 제2항)	• 증표 발급 기관을 ① 인허가·등록이 필요한 대리·중개업자는 해당 기관, ② 인허가·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로 명시함

〈표 1〉 계속

구분	현행	입법예고안
자료보관 의무 (영 §26②i)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자료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함(법 제 28조 제1항) - 보장성 상품 외에는 10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의 유지·관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기간'으로 유지·관리 기간을 명시함
고난도투자 일임·금전신탁 청약철회권 기산일 (영 §37①ii)	- 고난도투자일임상품 및 고난도금전신탁에도 7일간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됨 - 자본시장법상 숙려기간(2일 내 계약해지 가능)과 관계가 불분명함	청약철회권 기산일을 자본시장법상 '숙려기간이 경과한 날'로 명확히 함

○ 이러한 개선은 금융통합법률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신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준비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과 불명확성을 정비해나가는 과정이라 평가됨

- 다만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절차와 관련해 입법예고안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중 이사회가 없는 경우는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보임
 - '내부 의사결정기구'를 별도 정의하거나, 대표자의 승인에 의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이행 관련 금융소비자 확인 방법 확대는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편의성을 모두 제고할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경우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라 볼 것인지 문제 될 수 있어 보임
 - 하위법령 등의 입법적 수단이나 법령해석 등으로 판단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료됨



4. 결어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

-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시행 과정에서 기대했던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입법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 내지 불명확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 본 건 입법예고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그간의 경험과 논의를 반영하여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합리화·명확화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다루어진 부분들은 법률 자체의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들이며, 향후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많음

- 금융플랫폼 규제, 동일 기능·동일 규제 취지에 부합하는 보장성 상품 범위 확대, 비전속 대형법인보험대리점(GA)의 책임 강화 등 제도 정비는 물론, 규제 명확성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여전히 상존함
-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함